

9.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1998-45호 1998. 2. 3

주 요 골 자

- 가. 주택단지내 상가에 설치가능한 업종범위를 확대하여 노래연습장·세무사무소 등을 새로이 추가함.
- 나. 애국심 및 공동체의식 고취차원에서 3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국기게 양대를 설치하도록 함.
- 다. 현재 주택단지내 폭 1미터이상의 도로에는 폭 1.5미터이상의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보도를 설치토록 강화함으로써 입주민 보행안전을 도모함.
- 라. 공동주택 1층에 주민공동시설로 사용되는 필로티를 설치할 경우 당해 바닥면 적의 1/2에 해당하는 면적을 녹지확보 의무면적의 15%범위내에서 녹지로 보도록 함.
- 마. 생활수준향상으로 인하여 연탄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으므로 공동저탄장등 설치 관련조항을 삭제함.
- 바. 100세대이상 주택단지의 주민운동시설에 공중변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, 이용도가 미미하고 유지·관리도 어려우므로 위무설치대상에서 제외함.
- 사. 현재 전기시설 용량은 각 세대별로 3kW를 기본치로 하되 60㎡를 초과하는 10㎡마다 0.3kW를 추가로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, 생활수준향상 및 정보화추세를 감안하여 추가 확보치를 0.3kW에서 0.5kW로 강화함.
- 아. 어린이놀이터는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양호한 곳에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이상 이격시켜 배치도록 하고 있으나, 동 배치기준 외에도 주민운동시설

- 휴게시설과 연계성을 고려하고, 도로·주차장에서 2미터이상 이격시켜 보안 등을 설치토록 하는 등으로 어린이놀이터의 안전도·활용도를 증대함
- 자. 약국은 500세대이상의 단지에, 의원은 1천세대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, 의료시설공급확충등의 여건변화로 동시설을 설치의무화 할 필요성이 결여되었으므로 동 설치의무화 규정을 삭제함
 - 차. 현재 1천세대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의무화된 유치원을, 앞으로는 2천세대이상의 단지에 학교보건법 제 6조에 따라 유치원 배치가 가능한 단지의 경우에 한하여 설치토록 완화하고, 동시설을 보육시설·학원·의료시설·운동시설·서점등과 50%이상의 비율로 복합건축할 수 있도록 기준에 명시
 - 카. 현재 500세대이상 단지에 정구장·배구·농구·배드민턴장을 설치하되, 1천 세대이상의 단지에는 수영장·로울러장·정구장을 2천세대이상의 단지에는 소년축구·야구·정구장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, 이외에도 핸드볼장 및 생활체육시설(골프연습장·체력단련장·탁구장 등)등을 새로이 포함시킴으로서 주민운동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함

개정이유

공동주택의 건설여건이 변화하고 생활환경이 다양화됨에 따라 주택건설에 관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의 자율성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,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무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